



소 장

원 고 심명식(581227-*****)
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88번길 6-14, 203동 1005호(김량장동, LH행복주택)
 송달주소: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73, 202호 (김량장동) (송달영수인 : 우미숙)

피 고 임성균
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향교로13번길 5-9, 301호(양지리, 벨몽테양지)

배당이의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수원지방법원 2023타배437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23. 9. 18.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금 80,000,000원이 없는 것으로 경정한다.
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'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445-8 도로 125m'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. 10. 15. 접수 제59621호 채권최고액 80,000,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도로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용하는 '한국도로공사'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3타채2529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(갑제 1호증-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), 같은 법원 2023타배437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(갑제 2호증-배당절차안내문).
2. 원고는 2003.경 원고의 돈으로 '뮤직노래빠'라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였는데, 실내인테리어를 다 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'피고의 부친 망 임재혁'이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키면서 '이 사람에게 맡겨

수원지법 2023가단574707 배당이의 2023.09.22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

서 해라고 권유하였는데, 당시 그 인테리어업자는 원고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소문이
아 인테리어를 맡길까 말까 주저하자, 망 임재혁은 '저 사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잘하
여 결국 망 임재혁의 의견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인테리어를 맡겼습니다.



그런데 공사 시작 얼마 후, 그 인테리어 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해야한다고 하였으나, 당장 돈
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. 그때 피고의 부친인 망 임재혁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고, 급한 마음
에 망 임재혁에게 돈 50,000,000원에 월 이자 3,500,000원(월 7부)의 고리대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
다. 이후 인테리어 및 개업 과정에서 돈이 모자랐고, 추가로 임재혁에게 20,000,000원을 같은 이자
로 빌리게 되었으며, 망 임재혁은 원고 소유 부동산 '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산149 임야 13
641㎡, 동소 416 전 96㎡, 동소 445-8 도로125㎡'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. 10. 1
5. 접수 제59621호 채권최고액 80,000,000원'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(갑제 3호증-등기사항증
명서 3부).

3. 이후 원고의 사업 부진 등으로 '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산149 임야 13641㎡, 동소 41
6 전 96㎡'이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2693 임의경매로 2005. 12. 20.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, 이때 피
고의 부친 망 임재혁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.

그때부터 피고의 부 망 임재혁은 차용금 중 남은 금액을 달라고 독촉하였고, 심지어 '뮤직노래빠'라
는 유흥주점 영업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강요하였고, 망 임재혁이 직접 나서 망 임재혁의 지인을 데
리고 와서 '뮤직노래빠'를 1억 6천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고, 계약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
자 수차례 매도가격을 다운시켜 결국 2006. 8. 15. 95,000,000원에 '뮤직노래빠'라는 유흥주점 영업
장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, 위 양도금액 95,000,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중에 건물소유자
인 임대인에게 유흥특별소비세, 월세, 전기세 등 30,000,000원 가량을 지급하고, 나머지 65,000,000
원은 망 임재혁이 차용금으로 가져갔으며, 다음날인 2006. 8. 16. '뮤직노래빠' 사업자 폐업 신고
를 하였습니다(갑제 4호증-폐업신고사실증명).

결국 망 임재혁에게 빌린돈 70,000,000원은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2693 임의경매에서 배당받
은 몇 백만원과 '뮤직노래빠' 영업장 양도대금으로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망 임재혁과
는 채권채무가 남아 있지 않았고, 그 이후 임재혁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

4. 이후 2023.경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2693 임의경매에서 낙락되었던 '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
현리 445-8 도로125㎡'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
던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. 10. 15. 접수 제59621호 채권최고액 80,000,000원에 기해 근저



수원지법 2023가단574707 배당이의 2023.09.22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

수

당권자였던 망 임재혁에게 물상대위 압류에 대한 안내문에 발송되었고, 망 임재혁의 아들 임은 망인이 남긴 서류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한 것입니다.

5. 소멸시효항변

원고의 소외 망 임재석에 대한 채무는 이미 2006. 8. 15.자로 모두 정리되어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설령, 채권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명이 부족할지라도 위 채무는 이미 17년이 지난 것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3타배437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23. 9. 18.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함이 마땅합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갑 제1호증 |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|
| 2. 갑 제2호증 | 배당절차안내문 |
| 3. 갑 제3호증 | 등기사항증명서 3부 |
| 4. 갑 제4호증 | 폐업신고사실증명 |

첨 부 서 류

1. 전자소송동의 협약서
2.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
3.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

2023.09.22